

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  
(제32조제1항 관련)

대상	교육과목		교육 시간
1. 엽총·공기총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(법 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)	가.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	1) 소지·운반의 제한 2) 허가갱신절차(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3) 보관·휴대·운반시의 제한 4) 수렵절차 및 제한(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5) 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6) 성능개조 금지	30분
	나. 엽총·공기총·석궁의 취급실기	1) 성능 및 조작방법 2) 사격술(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3) 안전관리수칙 4) 도난·분실·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	30분
2.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	가.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	1) 제조 시설 및 보안 물건과의 보안거리 기준 2) 제조방법의 기준 3) 화약류의 사용허가 절차 4)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5) 화약류의 안전관리	30분
	나.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실기	1) 화약류의 종류 및 성능에 대한 지식 가) 폭발반응·순폭(殉爆) 및 폭발 속도 나) 화약류의 분류·구성·성질 및 용도 다) 화약류의 위험 또는 안정도 2) 화약류의 취급 가) 화약류의 보관(저장) 나) 화약류의 적재 운반 다) 안정도 검사 및 불량 화약류의 처	1시간

		<p>리</p> <p>3) 발파방법</p> <p>가) 발파의 준비</p> <p>나) 천공(구멍 뚫기)·장전 및 점화</p> <p>다) 불발잔약 및 후 가스의 점검 안전 처리</p> <p>4) 사고사례와 방지책</p>	
3. 수렴을 하고자 하는 사람	가.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	<p>1) 보관해제 절차 및 총포·총포 소지자의 위치정보수집 절차</p> <p>2) 소지·보관·운반·사용 등 취급 관련 규정</p> <p>3) 실탄 소지·사용 규정</p> <p>4) 수렴인 준수사항</p> <p>5) 수렴절차 및 제한(석공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</p>	30분
	나. 엽총·공기총·석공의 취급 실기	<p>1) 성능 및 조작방법</p> <p>2) 사격술(석공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</p> <p>3) 안전관리수칙</p> <p>4) 도난·분실·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</p>	30분